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46
----------	-------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 의 자 : 김태년 · 박지원 · 이재관
김한규 · 진선미 · 정준호
홍기원 · 서영석 · 이강일
박홍배 · 김영진 · 진성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공동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장치임. 특히 저출생 · 고령화, 산업 · 기술의 전환, 노동시장 양극화, 주거 불안 및 지역 불균형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단일한 정책 수단이나 특정 집단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층적 성격을 지니는데, 이런 구조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대 · 계층 · 산업 · 지역이 함께 참여해 폭넓은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적 공간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경제사회노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논의 구조의 경직성, 장기간 교착으로 인한 운영의 불안정성, 실질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 등 여러 한계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온 상황임.

특히 사회갈등이 과거의 노사 중심 범주를 넘어 산업전환, 청년 · 고

령사회, 돌봄·복지, 환경·에너지, 기술·데이터 거버넌스 등 광범위한 국가적 의제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기존 대화체계만으로는 충분한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축으로 나서야 함. 국회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사회적 이해관계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합의된 내용을 즉각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님. 또한, 정당·시민사회·전문가·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사회 갈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역할 수행이 가능함.

이에 국가적 중요 의제에 대한 폭넓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사회의 복합위기 및 미래문제 대응 등을 위한 사회적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요 주체 및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합의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대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장의2 신설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제126조의2 제1항에 따른 사회적대화 및 다양한 참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의2(제126조의2부터 제126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의2 국회에서의 사회적대화

제126조의2(사회적대화의 추진 등) ① 사회의 복합위기 및 미래문제 대응, 중요한 국가적 현안 해결에 필요한 경우 해당 의제별로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나 관련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대화(이하 “사회적대화”라 한다)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둔다.

- ② 사회적대화위원회는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또는 의제별 이해관계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각 교

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③ 사회적대화위원회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사회적대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6조의3(사회적대화의 결과 처리 등) ① 사회적대화위원회는 사회적대화의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해당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의원에게 배부 및 공표하고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취지를 관련 의안 심사에 반영하거나 제51조에 따라 제안한 경우에는 그 반영 사항을 해당 심사보고서 또는 의안 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정부 또는 행정기관 등에서 결과보고서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이송받은 정부 또는 행정기관 등은 그 처리 결과(이송받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되, 그 기간은 결과

보고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2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대화의 결과가 국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6조의4(사회적대화의 지원체계) ① 국회는 사회적대화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 사무의 처리·지원을 위하여 지원조직 설치, 지원 방안 수립,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및 관련 전문가의 활용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지원체계 마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장의 직무) (생 략)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u>②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의견</u> <u>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제126</u> <u>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적대화</u> <u>및 다양한 참여가 지속적으로</u> <u>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u> <u>다.</u>
<u><신 설></u>	<u>제9장의2 국회에서의 사회적대화</u>
<u><신 설></u>	<u>제126조의2(사회적대화의 추진</u> <u>등) ① 사회의 복합위기 및 미</u> <u>래문제 대응, 중요한 국가적 현</u> <u>안 해결에 필요한 경우 해당</u> <u>의제별로 사회·경제의 주요</u> <u>주체나 관련 이해관계당사자</u> <u>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u> <u>위한 대화(이하 “사회적대화”라</u> <u>한다)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u> <u>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둔다.</u>
	<u>② 사회적대화위원회는 사회·</u> <u>경제의 주요 주체 또는 의제별</u> <u>이해관계당사자를 대변할 수</u> <u>있도록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u>

<신 설>

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③ 사회적대화위원회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사회적대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6조의3(사회적대화의 결과

처리 등) ① 사회적대화위원회는 사회적대화의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해당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위원에게 배부 및 공표하고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취지를 관련 의안 심사에 반영

<신 설>

하거나 제51조에 따라 제안한 경우에는 그 반영 사항을 해당 심사보고서 또는 의안 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정부 또는 행정기관 등에서 결과보고서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이송받은 정부 또는 행정기관 등은 그 처리 결과(이송받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되, 그 기간은 결과보고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2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대화의 결과가 국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6조의4(사회적대화의 지원체계) ① 국회는 사회적대화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 사무의 처리·지원을 위하여 지원

	<u>조직 설치, 지원방안 수립,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및 관련 전문가의 활용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u> <u>② 제1항 이외에 지원체계 마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u>
--	--